##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91 발의연월일: 2020. 7. 1.

발 의 자: 박수영・유경준・안병길

윤창현ㆍ이헌승ㆍ이 영

이주환 · 김은혜 · 김도읍

전봉민 • 윤희숙 • 황보승희

태영호 · 이달곤 · 서병수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복귀의 인정 범위를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이 해외 투자기업을 국내로 복 귀시켜 일자리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 고, 2014년 이후 2020년 5월 현재까지 국내 복귀기업의 수는 71개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

이에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 시에도 유턴 기업으로 인정되도록 국내복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하여 보증제도

를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 화 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7조 및 제12조). 법률 제 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 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 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 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 나.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제7조제2항제2호 중 "양도 또는 축소"를 "양도·축소(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3호 중 "기업"을 각각 "기업(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양도 또는 축소"를 "양도·축소(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제3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내복귀"란 해외진출기업 3. -----다음 각 목 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 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
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
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
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

<신 설>

4. (생략)

- 선정) ①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 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 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 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 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 나.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 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 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에 위탁하여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 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 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것
-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제7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2

- 1. (현행과 같음)
- 2.

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 설·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 서

- 3. (생략)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 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 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 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 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u>기업</u>의 경 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 의 청산·양도를 완료할 것
- 3.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u>기업</u>의 경우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 장을 축소할 것

소(제2소제3호가목에 해당하
는 기업에 한정한다)
3. (현행과 같음)
3
·
1.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u>기업(제2조제</u>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u>기업(제2조제</u>
1. (현행과 같음)         2
1. (현행과 같음) 2 <u>기업(제2조제</u> 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u>기업(제2조제</u> 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다)

4. (생략)

- ④ (생략)
-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 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국 내사업장의 신설·증설 관련 국 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 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지원) ①·② (생략)

<신 설>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5
양도·축소(제2조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한정한
<u>다)</u>

- 제12조(자금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정부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중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제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해당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있다.

<신	설>
<신	설

④ 정부는 제3항의 보증제도를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